

수원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5293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B

원고보조참가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섭

피 고 C

변론 종결 2021. 3. 19.

판결 선고 2021. 4.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19.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란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과 피고 사이에 2017. 9.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한다'는

청구취지를 함께 기재하였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인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인의 법률적 효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이 부분은 소송법상 청구가 아니라 부인권 행사임을 명시하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6. 3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45,000,000원, 보증기한 2012. 6. 29.(이후보증기한이 수차례 변경되어¹⁾ 최종적으로 2018. 6. 22.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은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6.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가 2018. 2. 20. 이 사건 대출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6. 14.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45,766,705원(= 원금 45,000,000원 + 이자 766,7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보조참가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 및 A은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보조참가인이 정하는 이율로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2018. 8. 14.을 기준으로 한 대위변제금잔액은 45,751,915원, 확정손해금 잔액은 4원, 법적절차비용은 576,300원이다.

마. 한편 A은 2017. 9.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7. 9. 18. 접수 제3727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보조참가인은 2018. 8. 2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A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1848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6.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이를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아.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근저당권자인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5. 31.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G(중복) 임의경매, H 강제경매]에서 위 법원은 2019. 6. 11.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9카단203062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배당금청구권에 관한 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9. 6. 10.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위 배당금이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부인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 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가 없고, 행위 당시 자산 초과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판결 참조).

나) 한편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갑 제7 내지11,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명시장, I 주식회사, J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관악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2018.12. 20.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은 적극재산으로 20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이 37,500,000원 상당의 소외 회사 주식 7,500주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A이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소외 회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적극재산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② 반면 A의 당시 소극재산은 적어도 223,664,316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85,000,000원 +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38,720,945원2) + K에 대한 대여금 채무 19,000,000원 + E에 대한 대여금채무 26,000,000원3) +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50,000,000원 + I 주식회사에 대한 카드대금채무 3,104,281원 + J주식회사에 대한 카드대금채무 1,839,09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A은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여기에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관악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2019. 1. 21.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더러 비교적 소액인 피고에 대한 이자 및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에 대한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역시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부채(89,348,318원→148,518,256원)가 급증하고4), 매출액(310,802,911원→255,127,147원) 및 당기순이익(50,017,667원→29,689,678원)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A으로서의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연대보증채무액 상당의 금원을 실제로 상환해야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던 상황이었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기존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이자 유일한 책임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만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이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만을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A은 이로 인하여 장래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만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28765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11년 및 2012년 A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59,000,000원을 대여하고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전부 변제받지 못하다가 A이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된 2017. 9. 1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위 당사자 간의 거래기간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그 범위에 관한 판단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데,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위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지는 못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에 의하여 부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서영

1) 피고는, 2012. 2.경 금융 공공기관의 대표자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원고가 2017. 6.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기한을 변경하면서 A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하거나,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장된 보증기한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은 A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신용보증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부인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1. 6. 30.자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5,000,000원 + 2016. 4. 26.자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20,000,000원 + 2017. 7. 19.자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9,000,000원 + 2011. 7. 8.자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4,720,945원[갑 제17호증(채권자목록)에 따른 것으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발생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잔존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위와 마찬가지로 이자의 발생시기를 알 수 없어 원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4) 자산도 증가하였으나(156,528,477원→238,342,113원), 증가한 자산 중 상당 부분은 그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채권이고, 2017. 12. 31.을 기준으로 자산 총액에서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채권을 제외하면, 오히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